

마르크스와 미래의 기념비들

5강 : 『프랑스 內戰』

－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코뮌주의의 (불)가능성 －

강사 : 최진석

1. 해프닝의 혁명

맑스주의의 전 역사를 통해 헤겔은 항상 통렬한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맑스주의 사상과 운동에 가장 맹렬한 영향사적 흔적을 남긴 것도 언제나 헤겔이었다. ‘관념론의 괴수’, ‘국가철학 신봉자’, ‘전체주의의 사상적 기원’ 등으로 부정적 평가 일색이었던 헤겔이지만, 적어도 맑스주의가 머릿속 사상을 넘어서 현실의 운동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헤겔적 구도가 필요했으니 그것이 바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다. 『정신현상학』(1807)에서 처음 등장한 이 변증법적 이미지는 주인의 인정요구에 굴복해 종속적 지위에 떨어진 노예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연과 맞서고 마침내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거꾸로 ‘무능력한’ 주인에게 자기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게 된다는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속박되고 억압받는 자리에 있었으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깨닫고 마침내 주인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는 이 서사는 그 자체로 드라마틱하다. 인정과 노동의 변증법을 통해 진정한 자기 해방에 도달한다는 근대적 주체의 이상을 표현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마치 민담 속의 주인공이 천신만고 끝에 행복의 나라에 도착하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식으로 마무리되며 더 이상 소식을 전하지 않듯, 해방된 노예의 환희는 갑자기 종결된다. 이상한 노릇이다. 애초에 주인과 노예 사이의 인정이 지배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 조건 즉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자연이라는 거친 대립자를 마주하여 노동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얻은 생산물을 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해방을 맞이한 노예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예전의 주인을 예측시킴으로써 그의 노동을 착취하여 삶의 안락을 취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노예의 처지로 격하된 주인은 이제 그를 대신하여 자연과 맞서 투쟁하고, 그 힘을 통해 언젠가 다시 주인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역사의 무한정한 순환과 반복이 지속될 것이란 말인가? 이 같은 반문을 무시한 채 노예의 승리는 역사의 종언이요, 영원한 해방으로 귀결될 것이란 강변/환상을 우리는 스탈린주의 역사발전 5단계론의 도식에서 확인한 바 있다.

관건은 주인도 노예도 아니다. “주인이냐 노예냐?”라는 질문은 언제나 상대방을 전제한 채 성립하는 이분법이기엔 늘 자신의 대타(對他)를 은밀히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주인과 노예 사이의 대립이라는 구도 자체, 즉 두 항을 끊임없이 자리바꿈함으로써 지배와 예속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에 있다. 이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아예 설정 자체를 뒤집어서 새로운 판을 깔아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당 선언」(1848)에서 언명되었던 바, “두 개의 커다란 적대적 진영으로, 서로 직접 대립하는 두 개의 커다란 계급들로 분열된” 이 세계를 “계급 일반의 폐기”로 이끌어가고, 예전의 노예였던 프롤레타리아트가 마침내 “계급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지배도 폐기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¹⁾ 계급적 지배구도의 완전한 폐절만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사상적 관념을 떨쳐내 현실의 대지 위에 우리를 서게 할 것이다.

혁명은 그와 같은 근본적 절단을 가리키는 사건의 이름이다. 혁명이라는 개념이 특권적으로 전개된 근대는 ‘혁명의 역사’라 불릴 만큼 수많은 사건들의 연쇄로 기록되어 있다.²⁾ 하지만 그 모든 혁명이 모두 동일한 혁명은 아니었다. 가령 근대 세계의 두 분수령이라 할 만한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으로 거명되지만,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1)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주의당 선언」, 『맑스엥겔스 저작선집 1』, 최인호 외 옮김, 박종철출판사, 1994, 401, 421쪽.

2) 라인하르트 코젤렉, 『지나간 미래』, 한철 옮김, 문학동네, 1998, ###: 에릭 홉스봄, 『혁명의 시대』, 정도영 외 옮김, 한길사, 1998, ###

혁명'으로 명명된다. 양쪽 모두 '위대한 혁명'이라는 수식어로 그 사건적 의의를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실상 두 사건을 이끌었던 주체와 토대는 완전히 상반되다 못해 대립적이다. 혁명들 사이에 기입된 차이를 식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한히 돌고 도는 '변증법적 순환'에 갇혀 버리고, 종내에는 "모든 혁명은 새로운 지배를 낳을 뿐"이라는 냉소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다. 특히 프랑스와 러시아로 구분되는 국가/민족의 명칭들을 의당 전제한 채 두 혁명의 결과들을 놓고 비판하거나 상찬하는 일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 차라리 우리는 두 혁명 사이에 있는 다만 사건으로서의 또 다른 혁명, 혹은 오직 사건으로서만 기록되고 이내 점멸해 버린 혁명의 해프닝(happening)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파리코뭉이 그것이다.

2. 전후 사정

파리코뭉에 대한 지금까지의 총평은 그것이 맑스가 꿈꾸었던 혁명의 원상(原狀)이었다는 점을 귀결된다. 보불전쟁으로 인해 제2제정이 무너지고 생겨난 제3공화국 내에서 다시 벌어진 사건으로서의 파리코뭉은 국가라는 지배계급의 통치형태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최초의 '노동자 정부'라는 것. 그리고 이 정부는 1789년 혁명이 성립시킨 부르주아적 지배와 제2제정을 통해 확고하게 자리잡은 프랑스 사회의 대부르주아 금융자산 계급의 지배를 붕괴시키고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자치의 근본 원리로 도입하여 실행한 최초의 정치형태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1871년 3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단 두 달 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코뭉의 실험은 향후 혁명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고 사회주의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맑스의 사상에 공백처럼 남아있던 국가론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예시해 주는 본보기 역할을 한다. 1917년 레닌은 혁명을 목전에 앞두고 파리코뭉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국가와 혁명』을 집필하였는바, 우리는 러시아 혁명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그 사전검토 사항으로서 파리코뭉을 프랑스 혁명보다 앞세워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역사란 커다란 이행의 흐름 속에서 절단적 사건을 맞이하는 것이기에, 일단 1789년으로부터 1871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훑어보도록 하자.³⁾

1762	루소 『사회계약론』	양시앵 레짐
1774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 즉위	
1776	아메리카 독립선언	
1786	영불 통상조약	
1789	05/05 삼부회 소집	
	06/17 삼부회, 국민의회로 개칭	
	06/20 테니스코트의 서약	
	07/09 국민의회, 헌법제정의회로 개칭	
	07/14 바스티유 감옥 습격	
1789	08/04 봉건제 폐지	
	08/26 인권선언	
1791	06/20 국왕 일가 도주, 체포	

3) 연표는 지즈카 다다미, 『프랑스 혁명』, 남지연 옮김, AK커뮤니케이션즈, 2017와 가쓰라 아키오, 『파리코뭉』, 정명희 옮김, 고려대출판부, 2007에서 참고했다.

	08/27 오스트리아 '필니츠 선언'으로 무력개입 시사	
1792	04/20 프랑스,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 프로이센 개입 07/11 '조국이 위기에 처하다'. 의용군 징결 08/10 민중과 의용군 왕궁습격, 왕정 중지 08/25 봉건영주의 제 권리 폐지 결정 09/20 입법의회 해산 09/21 국민공회 성립, 왕정 폐지(제1공화국) 09/22 공화정 수립	
1793	01/21 루이 16세 처형 02/01 영국·네덜란드에 선전포고. 유럽 각국이 對프랑스 선전포고 연쇄 03/10 방데의 반란. 특별형사재판소 설치(9월에 '혁명재판소'로 개칭) 04/06 공안위원회 설치 05/31~06/02 민중이 국민공회 포위, 지롱드파 추방, 산악파 독재 개시 06/24 신헌법(93년 헌법) 제정 09/17 '반혁명용의자법' 제정. '자유의 전제' 10/10 '혁명정부' 수립 연말부터 각 전선에서 프랑스군이 승세	
1794	3월~4월 당통파 숙청 6월~7월 로베스피에르 실각, 처형. 공포정치 종료. 혁명의 우경화	
1795	08/22 신헌법(공화 제3년 헌법) 제정. 보통선거 폐지 10/26 국민공회 해산 10/27 총재정부 개시	
1796	03/02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에 취임	
1799	11/09('브뤼메르 18일') 나폴레옹 쿠데타. 프랑스 혁명의 사실상 종료	
1804	나폴레옹 황제 등극(제1제정)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 법전
1814	나폴레옹 폐위. 왕정복고(루이 18세 즉위)	빈체제
1815	나폴레옹 백일천하, 왕정복고 return	
1830	7월 혁명, 루이 필립 추대(7월 왕정)	
1848	2월 혁명, 제2공화국	독일3월혁명
1851	12월 루이 나폴레옹 쿠데타	
1852	12월 나폴레옹 3세 황제 등극(제2제정)	
1864	9월 제1인터내셔널 결성	
1867	경제공황과 파업	
1870	07/19 보불전쟁 발발 09/02 스당의 항복 09/04 공화주의 혁명 10/30 티에르, 휴전조약 준비	
1871	01/18 비스마르크,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이센 제국 수립 선포 01/28 휴전조약 성립 03/01 프로이센군 파리 입성 03/03 국민방위대 연합 결성 (국민군, 국민위병)	

	03/10 티에르, 수도를 베르사유로 이전 결정 03/17 파리 국민방위대에 대한 기습공격 계획 03/18 실패. 죽민방위대 중앙위의 파리 지배 03/26 코문 평의회 선거 03/28 파리시청에서 ‘코문선언’ . . . 05/21 베르사유군 파리 공격. ‘피의 일주일’ 시작 05/28 전투 종료 05/30 맑스 『프랑스 내전』 발표	
--	--	--

3. 코문이란 무엇인가?

(1) 국가 아닌 공화제

“제정에 대한 직접적 대립물은 코문이었다. 파리 프롤레타리아트가 2월 혁명을 수행할 때의 ‘사회공화국’이라는 구호는 계급지배의 군주제적 형태뿐 아니라 계급지배 자체를 제거해야 하는 공화국에 대한 모호한 주장을 표현하였을 따름이다. 코문은 이러한 공화국의 명료한 형태였다”(64).

(2) 인민무력에 의한 무력적 자위능력

“파리가 저항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포위공격의 결과로 군대가 없게 되었고, 주로 노동자들로 구성된 국민방위대가 그것을 대체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코문의 첫 번째 훈령은, 상비군을 폐지하고 그것을 무장인민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었다”(64).

(3) 인민통치에 의한 구성원들의 자치능력

“코문은 파리의 다양한 구에서 보통 선거권을 통해 선출된 시의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책임이 있었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었다. 그들의 대다수는 당연히 노동자들이거나 노동자 계급의 공인된 대표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코문은 의회단체가 아니라 행정과 입법의 업무를 겸하는 단체이어야 했다. 이제까지 국가 정부의 도구였던 경창은 즉시 자신의 모든 정치적 속성을 벗어버리고 책임이 있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는 코문의 도구로 전환되었다. 다른 모든 행정 부문의 관리들도 마찬가지였다. 코문의원들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공직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수행되어야 했다. 국가 고위관리의 권리 주장과 판공비는 이 고위관리들 자체와 함께 사라졌다. 공직의 관리는 중앙정부의 앞잡이들의 사유재산이기를 중지하였다. 시 행정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국가에 의해 행사된 발의권 전체가 코문의 수중에 놓였다”(64).

(4) 교육을 통한 코문의 코문주의적 재생산

“[성직자 권력의 분쇄와] 모든 교육기관은 인민에게 무상으로 개방되었고, 동시에 교회의 모든 간섭으로부터 깨끗해졌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 자체가 계급적 선입견 및 정부 권력이 부과한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65).

(5) 국가에 대한 코문적 정치·사회질서의 우월성

“전국적 조직에 대한 개략적인 구상 속에는, 코뮌이 가장 소규모의 촌락에서도 그 정치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과 농촌의 상비군은 극히 짧은 복무기간을 가지는 민병대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 국민의 통일성은 파괴되지 않고, 반대로 코뮌 헌법에 의해 조직되어야 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해 독립적이고 군림하려고 하면서도 그러한 통일의 구현체임을 주장한 국가 권력의 절멸을 통해 현실로 되어야 하는데, 국가 권력은 국민의 몸에 붙어 있는 이상 생성물에 불과한 것이었다”(65).

“코뮌 체제는 사회에서 자양분을 얻고 사회의 자유로운 운동을 저해하는 ‘국가’라는 이상 생성물이 이제까지 빨아먹은 모든 힘을 사회라는 몸통이에 돌려줄 것이다”(66).

(6)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의 현실적 장치인 코뮌

“코뮌은 군대와 관료라는 양대 지출원천을 중지시킴으로써 모든 부르주아 혁명의 슬로건-값싼 정부-을 현실로 만들었다. 코뮌의 존재만으로도, 적어도 유럽에서는 계급지배의 통상적인 골칫거리이자 필수불가결한 외투인 군주제의 부재를 전제로 하였다. 코뮌은 공화국에 진정한 민주주의 장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값싼 정부’도 ‘진정한 공화국’도 코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그것들은 부수적으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 이전의 모든 정부 형태가 본질적으로 억압적이었음에 반해 코뮌은 철저히 팽창될 수 있는 정치 형태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코뮌의 진정한 비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코뮌은 본질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부였으며, 전유계급에 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계급투쟁의 결과였으며, 노동의 경제적 해방이 완성될 수 있음이 마침내 발견된 정치 형태였다. 이 마지막 조건이 없다면, 코뮌 체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며 미망이었을 것이다. 생산자의 정치적 지배는 그들의 사회적 노예제의 영속화와 병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코뮌은, 계급들의 존재에 근거하는, 따라서 계급지배의 존재에 근거하는 경제적 토대를 전복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봉사해야 했다. 일단 노동이 해방되면, 모든 사람이 노동자가 되며, 생산적 노동은 계급적 속성을 중지하게 된다”(67).

4.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국가, 폐지인가 소멸인가?4)

“코뮌은 처음부터 다음의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노동자 계급은 일단 지배권을 획득하면 낡은 국가기구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관리해 나갈 수 없다는 것. 이러한 노동자 계급은 방금 전취한 지배권을 다시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반대하여 이용되어 온 모든 낡은 억압기구를 제거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들의 대의원들과 관리들은 누구나 예외없이 언제든지 경질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5)

“실제로 국가란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억압기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이는 민주공화제에서도 군주제에서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국가는 기껏해야 하나의 악에 불과한 바, 계급적 지배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악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는 코뮌과 마찬가지로, 새롭고 자유로운 사회 상태에서 성장한 한 세대가 국가의 이 모든 폐물을 내던질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가장 신속하게 이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근 독일의 속물들은 다음과 같은 말에 또 다시 유익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좋다, 신사 여러분, 이 독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싶은가? 파리 코뮌을 보라.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였다.”6)

4) 최진석, 「소비에트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러시아혁명에서의 코뮌과 국가, 마음의 문제」(제8회 맑스코뮌날레 엮음, 『혁명과 이행』, 한울, 2017에 수록) 중 제4절을 수정해 옮겨놓는다.

5)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의 『프랑스에서의 내전』 독일어 제3판 서설, 『저작선집 6』, 333-334쪽.

(1) 맑스와 파리코문의 이상

19세기 프랑스의 블랑키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용어를 맑스가 차용했을 때는 엄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⁷⁾ 그 이후 1871년 파리코문을 목격하여 그에 관한 글을 작성하고, 다시 1875년 「고타 강령 초안 비판」을 제출하는 가운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우리의 주안점은 러시아 혁명에서 등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형태를 소비에트 민주주의와 연결지어 보는 것이지만, 먼저 맑스의 관점을 일별함으로써 전반적인 논의의 가닥을 잡아보려 한다.

맑스가 착목했던 파리코문의 중대한 의의는, 코문이 나폴레옹이 표방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립할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형식을 창안했다는 데 있었다. 물론,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가 지배하는 제2제정이었다. 그러나 샤를 루이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은 러시아와 같은 전제주의가 아니었고, 수차례의 입헌적 개혁을 거치며 자유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던 와중이었다.⁸⁾ 1848년 이래 금융과 산업부문에서 부르주아지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그 결과 프랑스 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패전과 제3공화국의 선포, 그리고 파리코문의 성립에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은 국가가 자신의 대립물로 급격히 전화하는 극적 무대를 제공했다. 맑스에 따르면, 1789년의 혁명은 근대 국가의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능력을 모조리 빼앗아 더욱 발전시켰으며, 1871년의 파리코문은 바로 그 국가의 진정한 대립물로서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었다.

코문 - 그것은 사회를 통제하고 제압하는 대신에 사회 자신의 살아있는 힘으로서 사회가 국가 권력을 다시 흡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억압의 조직된 힘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힘을 형성하는 인민 대중 자신이 국가 권력을 다시 흡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민 대중의 적이 인민 대중을 억압하기 위하여 휘둘러 온 사회의 인위적 힘(인민 대중의 억압자들이 전유하고 있는)인민 대중에 대립되고 반대하여 조직된 인민 대중 자신의 힘)을 대신할 인민 대중의 사회적 해방의 정치적 형태이다. [...] 코문, 즉 사회적 해방의 정치적 형태 [...] 노동 해방의 정치적 형태. [...] 코문은 노동자 계급의 사회 운동, 따라서 인류의 전반적 재생의 사회 운동이 아니라 그 행동의 조직화된 수단이다.⁹⁾

맑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코문을 ‘사회 공화국’(soziale Republik)이라 명명한다(이를 ‘공화제’로 번역하는 게 더욱 타당하다는 점은 다시 언급하도록 하자). 하지만 요점은 코문이 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의 이름을 수여받는 게 아니라 계급해방이 수행되는 ‘조직화된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즉 국가를 ‘대체’하는 ‘다른’ 조직화다. 예를 들어, 파리코문이 내린 첫 번째 훈령은 상비군을 폐지하고 그것을 인민의 무장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억압기구이던 경찰과 군대는 이로써 인민의 자기 방어적 수단으로 전화하게 되고, 코문을 지속시키는 물질 수단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것은 인민무력의 원리다. 이와 나란히 인민권력(인민주권)

6) 엥겔스, 「칼 맑스의 『프랑스에서의 내전』 독일어 제3판 서설」, 335-336쪽.

7) David McLellan, *Karl Marx: His Life and Thought*, Palgrave Macmillan, 1973, p. 118.

8) 노명식,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민까지, 1789-1871』, 책과함께, 2011, 362-378쪽.

9) 칼 맑스, 『프랑스에서의 내전』 첫 번째 초고(1871),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4』, 최인호 외 옮김, 박종철출판사, 1995, 18, 20쪽.

의 원리 역시 제출되었다. 다양한 공적 사안들에 관해 시민들의 직접 참여나 선출권이 보장받았고, 말은 바 직무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을 통해 책임도 질 것이 요구되었다. 모든 공직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에 준해 급여가 책정되었고, 임기 중에는 다른 시민들에 의한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도 수용되었다. 무엇보다도 코문은 부르주아 대의제의 의회적 기능을 넘어섰는데, 이는 코문이 입법과 행정을 함께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분립과 같은 부르주아 의회주의의 허울뿐인 원칙은 가볍게 기각되었다. 코문의 노동은 분업화된 소외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것이 ‘코문적 사물의 질서’였던 셈이다.¹⁰⁾

이와 같은 코문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한 것이 고타 강령에 대한 맑스의 비판이었다. 그가 이끌던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과 페르디난트 라살레(Ferdinand Lassalle)의 전 독일 노동자협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강령에 대해 논평하며,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코문주의) 사회의 미래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이미지란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원리가 지켜지는 사회로서,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곧장 실현되기 어려운 “공산주의의 더 높은 단계”를 가리킨다.¹¹⁾ 이를 더 정확하고 자세히 풀면 다음과 같다. 부르주아지가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국가가 사회를 지배하는 형태이며, 따라서 자유로운 노동과 그 생산물의 자유로운 처분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공산주의는 사회를 국가 위에 올려놓는 단계를 뜻하며, 이러한 역전과정은 순식간에 완벽히 이루어질 수 없는 노릇이다. 이행의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는 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도약하기 위한 현실적 받침대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가 놓여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이행기가 있으니, 이때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¹²⁾

맑스가 언급하는 공산주의가 곧 코문에 의한 인민의 자기통치라는 점은 쉽게 알 만하다. 파리코문을 통해 그는 이러한 정치형태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았으며, 더 큰 지역적·국민적 단위에서도 이를 실현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이행기 강령인 「고타 강령 초안 비판」은 그 구체적 방법론이자 수단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파리코문은 그 자체가 공산주의는 아니었다. 파리코문의 구성원들은 중간계급부터 사회주의자들까지 다양했으며, 조직과 구성은 일정하게 ‘민주주의적’ 절차성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프롤레타리아적’이지도 않았고, 일원적 계급의 ‘독재’에 근접하지도 않았다.¹³⁾ 파리코문의 구성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거부했을 뿐, 민주주의 자체의 장점과 원리를 자신들의 운영방식에 무리없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파리코문은 ‘인민 민주주의적 대의체’라 할 만하고, 따라서 1917년 이전의 러시아 소비에트 민주주의에 더욱 유사해 보인다. 이는 맑스가 민주주의 공화국을 공산주의와 등치시키지 않고, 역으로 부르주아 사회에서 발달한 마지막 국가 형태로 간주하여 계급투쟁의 전장으로 묘사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¹⁴⁾ 그 역시 민주주의를 공산

10) 칼 맑스, 『프랑스에서의 내전』(1871),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4』, 64-65쪽.

11) 칼 맑스, 「고타 강령 초안 비판」(1875),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4』, 377쪽. 미래 공산주의의 전(前) 단계로서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공식화된 것은 스탈린 시대의 일이다. 레닌만 해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혼용해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12) 맑스, 위의 글, 386쪽.

13) George Lichtheim, *Marxism.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Praeger, 1961, pp. 112-121.

14) 맑스, 같은 글, 386-387쪽.

주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일종의 이행기적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제 그 구체적인 판단은 1917년의 레닌에게 맡겨졌다.

(2) 레닌과 코뮌-국가의 러시아적 현실

1917년 7-8월 사이에 집필된 『국가와 혁명』에서 레닌은 1848년 이래 프랑스 혁명의 경과를 분석하면서 파리코뮌에 이르러 마침내 이렇게 단언한다.

코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형태이며, 그 정치형태 하에서 노동의 경제적 해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코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시도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타도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며, 타도된 국가기구를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해야 하는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형태이다.

좀더 나아가 1905년에서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도 코뮌을 결성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써 맑스의 찬란한 역사적 분석을 확증해 주고 있다.¹⁵⁾

맑스의 논지에 따라 레닌은 파리코뮌이 상비군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에 관료를 복종하게 함으로써 국가라는 조직을 “근본적으로 상이한 형태를 지닌 또 다른 조직으로 방대하게 대체하였다”고 설명한다. 코뮌의 등장은 일종의 ‘양질전화’에 비견될 만한 전환으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부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전화”한 결과란 것이다. “국가는 더 이상 기존의 국가가 아닌 것으로 전화했다.”¹⁶⁾ 국가를 넘어서 조직,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 정치형태의 이름은 코뮌이자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그렇다면 레닌이 프랑스 혁명사의 사건적 경험과 맑스의 국가 이론으로부터 추출해 냈다고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무엇인가?

맑스 국가론의 본질은 단일 계급에 의한 독재가 모든 계급사회 일반을 위해서나 부르주아지를 타도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를 분리시키는 완전한 역사적 시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완성된다. [...]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풍부하고 아주 다양한 정치적 형태들을 창출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필연적으로 동일하게 될 것이다.¹⁷⁾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절단하는 역사적 시기이며, 단일 계급의 지배를 허락하는 이행기라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잘 따져보면 이행기에는 여전히 다른 계급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들은 새로운 지배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의 독단적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억압자에 대한 억압”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를 재조직하고 사회를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재조직하는” “국가의 사회주의적 재조직화”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특징이 여기 있다.¹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와 같은 성격은 레닌이 이 단계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 자본주의의 발전된 생산력을 프롤레타리아가 전유함으로써 생산관계에 일신을 기하고,

15) 블라디미르 레닌, 『국가와 혁명』(1917), 김영철 옮김, 논장, 1988, 74쪽. 이하 러시아어판을 대조해 번역에 수정을 가해 인용한다.

16) 레닌, 위의 책, 59쪽.

17) 레닌, 위의 책, 51쪽.

18) 레닌, 위의 책, 61쪽.

부르주아 공화국을 민주주의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정치적 역학관계를 뒤바꾸는 것이다. 아직 “더 높은 단계”로서의 공산주의는 아닌, “공산주의의 첫째 또는 낮은 국면”에서 그렇다는 뜻이다.

첫 번째 국면이나 단계에서의 공산주의는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적인 전통과 유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다. 따라서 첫째 국면에서의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지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 자신의 해방을 위해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계급에게 민주주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뛰어넘지 못하는 경계가 결코 아니며, 그것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상의 한 단계에 불과할 뿐이다.¹⁹⁾

레닌의 이론적 기획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불가피하지만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될 것이었다.²⁰⁾ 러시아는 이미 제국시절에 발달된 선진적 산업자본주의의 생산력에 도달하였고, 진전된 노동의식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파리코뮌과 유사한 혁명적 사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남겨진 질문은 국가, 곧 프롤레타리아 독재기의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만약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더 높은 공산주의의 전(前) 단계이고, 엥겔스가 말하듯 국가가 소멸하는 단계라면, 독재 시기의 조직 곧 코뮌이란 대체 어떤 정치체를 뜻하는가? 이로부터 저 유명한 준-국가의 테제가 나온다.

국가의 사멸에 대한 엥겔스의 논제는 러시아 혁명을 전후한 시기 유럽 좌파들에게 일종의 대기주의적 환상을 심어주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공산주의 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부르주아 국가는 스스로 사멸하고 말테니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²¹⁾ 부분적으로 레닌조차 이런 입장을 취한 적이 있었지만,²²⁾ 「4월 테제」에서 보았듯이 1917년에 이르러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적극적인 권력의지를 강조하고 나선다. 제반조건이 성숙한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는 국가가 저절로 죽어 없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제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이다. 혁명 후에 사멸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 또는 준-국가(semi-state; polugosudarstvo 반[半]국가)이다.”²³⁾ 부르주아 국가를 인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폭력혁명이다. 오직 이 방법을 거치지 않고는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고도화된 부르주아 정치질서를 한 순간에 장악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과정은 아나키스트 일반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라는 적의 실체를 실존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레닌이 수차례 강조하듯, 사회주의는 무(無)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토양으로부터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국가를 폐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

19) 레닌, 위의 책, 122-123쪽.

20) 맵스 역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시기적으로 짧고 도덕적인 성격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Hal Draper, “Marx and the Dictatorship of Proletariat,” Bob Jessop & Russel Wheatley (ed), *Karl Marx'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s: Critical Assessment III*, Routledge, 1999, pp. 289-315.

21)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의 이런 관점이 전위적 혁명가들의 당과 같은 레닌적 명제를 반대했던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폐기하고 의회주의적 전환을 꾀했으며, 이에 대해 레닌은 지속적으로 공박을 가했다. 블라디미르 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1918), 허교진 옮김, 소나무, 1988.

22)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 191쪽. 하지만 이 진술은 러시아 노동계급이 전위의 도움을 받아 혁명 화되기까지의 준비기간을 지시하는 것이었다.

23) 레닌, 『국가와 혁명』, 30쪽.

가의 형태가 ‘존속’하고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는 이로부터 비롯된다. 이와 같이 이행기의 진정한 의미는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가 운영하는 프롤레타리아 준-국가,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현실적으로 전유하는 데 있다.²⁴⁾ 이것이 그가 프랑스 혁명 이후의 정치사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및 국가의 제거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며, 그 마지막 단계로서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형태를 코뮌에서 찾는 이유다. 레닌에게 코뮌은 곧 프롤레타리아 독재였고, 국가 아닌 국가[“무(無)국가”]이자 국가 이상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4월 테제」에서도 어느 정도 제시된 것이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양하라고 주장했던 레닌은 부르주아적인 의회제 공화국 대신 파리코뮌을 모델로 삼은 코뮌-국가(gosudarstvo-kommuna)를 강령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파리코뮌을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로 규정짓고, 혁명기 러시아의 실천적 강령들을 파리코뮌의 사례로부터 복기한 레닌은 맑스가 ‘발견하지 못한’ 사건의 시공간을 열어젖힐 필요가 있었다. 파리라는 지역적 단위의 코뮌이 만약 러시아처럼 광대한 영토와 국가적 지배체제가 유지되는 곳에서 실현되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가? 파리에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러시아에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절대 같을 수 없을 터이다. 인민권력과 인민무력이라는 차원에서 파리코뮌은 국가를 대체하는 인민의 자기통제적 자치기구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러시아로 지리를 옮기자 여기에는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차원이 추가되었다. 바로 인민국가의 문제였다. 즉 국가를 완전히 폐기할 수 없을 때, 인민 곧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떻게 국가를 자신의 것으로 접수할 것인가?

“[파리 - 인용자]코뮌이 시간상의 한계로 발전시키지 못했던 전국적 조직”의 문제, “전국적인 통일체의 조직”이라는 문제는 레닌이 직면했던 고유한 과제였다. 파리코뮌을 외부에서 관찰하며 그 경과와 구성에 대해 논평했던 맑스는 국가 단위의 코뮌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 코뮌의 전체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파리의 경험은 1917년의 러시아에서는 곧이곧대로 적용되기 어려웠다. 레닌은 맑스의 동의를 끌어오며 자신의 조직론을 여기에 보태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러시아적 판본을 완성해 낸다.

맑스는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사용했다. 즉 부르주아적이고 군사적이며 관료적인 중앙집권제에 대항하고, 의식적이고 민주적이며 프롤레타리아적인 중앙집권제를 위해서 ‘전국적인 통일체가 구성되어야 한다.’²⁵⁾

5. 더 높은 삶의 형식과 새로운 인간, 또는 (불)가능한 코뮌주의

“코뮌은 다수의 노동을 소수의 부로 전화시키는 저 계급소유를 철폐하고자 하였다. 코뮌은 수탈자에 대한 수탈을 의도하였다. 코뮌은, 지금 무엇보다도 노동의 노예화와 착취의 수단인 토지와 자본이라는 생산수단을 자유로운 연합된 노동의 단순한 도구로 전화시킴으로써 개인적 소유를 사실상 만들려 하였다. - 그러나 이것은 코뮌주의, ‘불가능한’ 코뮌주의이다! 자, 지금의 제도의 지속 불가능성을 충분히 통찰할 줄 아는 지배 계급의 그러한 인물들-그들은 다수

24) 레닌에 따르면 맑스는 부르주아 국가의 소멸 이후에 나타나는 단계에 대해서는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정치형태가 ‘준-국가’적 상태임을 규명한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뜻이다. 레닌, 위의 책, 73-74쪽.

25) 레닌, 위의 책, 71쪽.

이다-은 협동조합적 생산의 주제넘고 허풍떠는 사도들인 체하고 있다. 협동조합적 생산이 공허한 가상이나 사기로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한다면, 협동조합들이 모두 공동계획에 의거하여 국민적 생산을 조절하고 따라서 생산을 자기 자신의 지휘 아래 두어 자본주의적 생산의 운명인 지속적인 무정부 상태와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경련을 끝장낸다면-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코뮌주의, '가능한' 코뮌주의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노동자 계급은 코뮌으로부터 기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인민의 포고령에 의해 도입될 기성의 고정되고 준비된 유토피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해방을 달성하고 그와 함께 현재의 사회가 자기 자신의 경제적 발전을 통해 불가항력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더욱 고차적인 삶의 형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오랜 투쟁, 즉 환경과 함께 인간을 완전히 변모시키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68).”